

## 군사과학연구소 규정(4-2-7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군사과학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진흥을 위하여 '건양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3-6-4)'에 의하여 설치된 건양대학교 부설 군사과학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특성화 및 학제적 연구사업 개발 및 추진
2. 특화된 6개 연구실 관련 분야별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
3. 민·관·산·학·연·언이 연계된 협력체제 구축사업 추진
4. 평생교육대학과 연계한 군 교육 및 정책 프로그램 운영
5. 기타 필요한 제반 사업(학술지 발간, 세미나 개최)

제3조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총괄한다.

②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해당 전공 근무경력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 (조직 및 직무) ① 연구소에는 「국가위기관리연구실」, 「국방R&D연구실」, 「통일전략연구실」, 「군사정책/전략연구실」, 「동북아지역연구실」, 「군사이론/교육연구실」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에는 전임연구교수(연구원), 연구위원(위촉연구원)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③ 각 연구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 '건양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' 제7조에 의하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연구소의 세부운영에 대하여 군사학과와 협의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1. 연구소의 규정 제·개정
2. 연구소의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의 발전계획
4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연구간접경비 및 대학의 재정지원금
2. 연구용역 수탁

3. 교내·외의 개인,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

4. 기타 보조금

제7조 (기타 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